배곧초록유치원 규칙

2019. 10. 18. 규칙 제정 2020. 05. 25. 1차 개정 2020. 10. 14. 2차 개정 2021. 02. 17. 3차 개정 2022. 02. 18. 4차 개정 2023. 02. 16. 5차 개정 2023. 12. 20. 6차 개정

< 근거 >

- 유아교육법
- 유아교육법시행령
- 유아교육법시행규칙
- 교육부 고시 2019 개정 누리과정
-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경기도 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 지침
- 경기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원에서의 교육활동 및 운영에 관해 필요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명칭) 본원은 배곧초록유치원이라 명한다.
- 제 3조 (위치) 본원은 경기도 시흥시 배골1로 28-11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 · 학기 · 휴업일

- 제 4조 (교육 연한 및 학년도) 우리 유치원의 교육 연한은 1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유아교육법 제12조 1항에 의거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5조 (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 2학 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조 (휴업일)

-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본 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토요일
 - 2. 관공서의 공휴일
 - 3. 하계, 동계, 학년말의 휴가
 - 4. 개워기념일
 - 5. 재량휴업일
 - 6.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 ② 제1항 제3호의 휴업일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3호의 휴업일을 감안하여 교육일수를 180일 이상으로 운영하는 범위 안에서 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 ③ 원장은 비상 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장은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 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0조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 ⑥ 제1항의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유아정원

제 7조 (학급편제) 본 원의 학급 수는 교육과정반은 인가 학급 17학급(특수학급 포함) 이내에서 유아모집 상황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증감 편성할 수 있다. 방과후 과정반은 수요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별도 편성한다.

제 8조 (학급편성 및 유아정원)

- ① 일반학급은 단일 연령으로 편성한다.
- ② 특수학급 편성은 혼합 연령으로 편성하고 일반학급과 통합 운영한다.
- ③ 방과후 과정반은 단일연령으로 편성 운영한다.
- ④ 유아 정원은 당해년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당 편성 규정에 의거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 9조 (교육내용) 본 원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수준교육과정과 경기도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유아 의 발달 정도와 유치원 실정,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유치원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적용한다.
- ② 방과후 과정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일과 운영이 교육과 보호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③ 특수학급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누리과정과 경기도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 정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유아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 교육과 정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제5장 수업일수 . 교육시간 및 수업운영 방법

제10조 (수업일수)

- ① 주5일 수업으로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하되, 천재 · 지변 및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 유치원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③ 원장은 유아교육법 제31조 제 1항, 제3항에 따른 휴업 명령이나 휴원처분 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휴업 기간 또는 휴원 기간) 범위 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허가현장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시간)

- ① 본 원의 교육시간은 1일 5시간(09:00~14:00)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유 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 ② 1일 교육활동의 시종 시각은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 ③ 감염병 확산 시(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단계), 교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수업운영방법)

- ① 교육과정운영에 따라 일반학급·특수학급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사는 유아의 개별 발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활동은 놀이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실내외환경과 교재 · 교구는 계절, 주제, 행사 및 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한다.
- ④ 교육활동은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들을 활용한다.
- ⑤ 교재·교구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수매체를 활용하되, 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자료를 사용한다.
- ⑥ 교사는 확산적 질문을 많이 하여 유아의 호기심과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창 의적인 사고를 촉진한다.
- ⑦ 등교수업 후, 감염병 확산 시(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 경계 단계 격상 또는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등) 등교수업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 (수업연구) 교사는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부단한 연구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 (수업장학) 원장과 원감은 교사들의 교수-학습능력 향상과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수업장학을 실시하고 지도 조언을 한다.
- 제15조 (급·간식)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거쳐 심의 후 유아에게 적합한 급·간식을 제공한다.

제16조 (유아 평가)

- ① 유아 평가는 유아의 발달 정도를 특정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와 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하되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평가에 역점을 둔다.
- ② 유아 평가는 학기 초에 평가의 영역, 평가의 방법, 평가도구의 제작, 평가의 시기 등이 포함된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 ③ 평가 결과는 유아 개개인의 성장 발달을 돕고,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 ④ 1년에 2회 이상 유아의 발달 상황을 가정에 제공하여 유아의 바른 성장을 돕는다.

제17조 (생활기록부 작성 · 보관)

- ① 유아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 ②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평가하여 유아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

제6장 입학, 재입학, 편퇴학, 전입학, 휴학, 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

제18조 (입학)

- ①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 ② 신입 유아 선발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운영하며 당해 연도 경기도교육청 유아모집·선발계획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 ③ 입학 시기는 9월 31일까지로 하며 학급당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 ④ 본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 (재입학/편입학/전입학) 본원으로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20조 (휴학)

- ①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휴학을 희망할 경우 원장은 휴원서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과정 이수를 중단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휴학은 학년도를 기준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까지 할 수 있다.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자퇴/퇴학)

- ① 개인사정으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 자퇴원서를 받아 처리한다.
- ② 유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결석할 때
- 2. 질병 및 기타 사유로 본인 및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수료 및 졸업)**
 - ① 원장은 유아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② 수료 및 졸업에 해당하는 수업일수는 유치원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다.
 - ③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5세 유아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④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3,4세 유아에게 수료장을 수여한다.

제7장 방과후 과정 운영

제23조 (방과후 과정 운영)

- ① 방과후 과정은 오후별도 방과후 과정반으로 운영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재 량휴업일과 방학 중 운영일을 포함하여 200일 이상 운영한다.
- ② 운영시간은 1일 10시간 이상 (08:00~19:00) 운영한다.
- ③ 오후별도 방과후 과정으로 <mark>운영하며</mark>,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경기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을 근간으로 한다.
- ④ 방과후 과정 비용 및 수업일수, 교육시간,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과후 과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 ⑤ 다양한 방과후 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8장 유치원운영위원회 조직

제24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유아교육법 제19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5조 (구성 및 임기)

- ① 운영위원회 구성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으로 구성한다.
- ②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제26조 (기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 1.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5.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6.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8.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 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 가 등에 관한 사항
- 9.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10.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1. 유아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장 교직원

제27조 (교직원의 임무) 본 원의 교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유아를 교육한다.
- 2. 원감은 원장을 보좌하여 원무를 관리하고,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교육한다.
- 4. 행정직원 등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28조 (연수)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재연구, 수업연구, 교직원 연수 등은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계획에 의한다.

제29조 (근무규정)

- ①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08:40~16:40을 원칙으로 하고, 원장의 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 ② 교직원의 복장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 이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0장 수업료,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

- 제30조 (수업료 및 입학금) 본 유치원의 유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과 경기도교육청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1조 (기타 비용 징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치원장이 정한다.

제11장 규칙 개정 절차

제32조 (규칙 개정 절차) 규칙의 개정은 유치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유아교육법 개정.2016.05.29.)

제12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 제33조(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생활지도 할 수 있다.
 -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8.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10. 그 밖에 원장 및 교원의 전문적 판단으로 생활지도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행위
 - 1)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시간 준수
 - 예) 반복적인 지각, 반복적인 하원 시간 미준수, 귀가동의서에 따라 귀가 하지 않고 수시로 귀가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 포함)
 - 2) 유치원 출입에 관한 사항
 - 예) 하원 후, 재등원(귀가 동의서와 상이한 경우) 하는 경우
 - 3) 교재교구, 시설 등이 파손될 정도 위험한 행위
 - 4) 타인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언행 또는 조장하는 행위
 - ② 위 사항에 대해「유치원 교원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고시」제2장 제5조부터 제8조에 의거 유아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할 수 있다. 보호자는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34조(교육활동 보호) ① 원장과 교원은 각 호의 상황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교육활동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보호자가 교원에게 불쾌한 언어(농담, 폭언 등)를 사용하는 행위
 - 2. 보호자가 교원의 수업 등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
 - 3. 교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4. 2호, 3호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
 - ② 위 사항에 대해 원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교육활동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치를 취한다.
- 제35조(유아 소지 금지 물품) ①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3. 녹음 및 촬영 기능 등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의 우려가 있는 물품
- 4. 유아 간 갈등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물품
- 5. 고가의 물품
- 6. 그 밖에 교직원협의회 등을 통해 결정되는 금지 물품
- ② 위 사항의 물품 처리 방법은 교직원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 제36조(훈육) 원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방법대로 유아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문제행동 유아를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① 유아의 신체를 잡거나 안기
 - ② 문제행동 유아 분리하기
 - 1. 주의를 준 후 교실 내 다른 좌석 이동
 - 2. 1호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실 내 지정 위치로 이동
 - 3. 2호의 지도에 불응할 경우 교실 외 장소로 이동(단, 유치원 기관 내 교원의 보호 하에 이동)
 - ③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유아의 놀이권·학숩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장과 교원은 보호자에게 알리고 조언 및 상담을 실시한다.
 - ④ 제①,②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37조(기타) 본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규칙) 이 규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